

현행 변사체검시제도 검토

이 임 성 *

I. 논의 배경	
II. 검시제도 개관	
1. 검시(檢視)의 의의	3. 검시의 대상
2. 검시의 주체	4. 검시의 법적 근거
III. 현행 변사체검시의 실무 및 절차	
IV.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논의 배경

인간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그 죽음 역시 소홀히 될 수 없고, 억울한 죽음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국가는 소외되거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사인확인제도, 즉 검시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근대적 의미의 검시제도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 대한 것이었고, 따라서 당시에는 사람의 생명을 범죄로 잃었을 경우 그 범인의 검거 및 처벌을 위한 형사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이념이 변화됨에 따라서 검시제도가 모든 죽음에 대하여 피해자 개인식별 및 사인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사망통계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국민 보건과 의학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새로운 추세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테러, 항공기, 지하철, 열차 등의 대량 재난 사고와 보험사고 등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¹⁾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비상임연구원

1) 조기룡, 각국의 검시제도,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논문집(2004), 174면. 그리고 조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위와 같은 현대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범죄수사에 종속되거나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바, 현행 제도가 과연 국가사회 구성원의 자연사가 아닌 모든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적절한 제도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좁혀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특히 1992년도 제20회 법의학회 세미나에서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논의되고, 1996년도 변협·의협의 공동세미나에서 검시제도의 법적·의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논의되는 등 주로 법의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 졌다. 그러다가 2001년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2. 7. 31. 대한법의학회에 의뢰하여 검시(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고,²⁾ 특히 2004. 7. 30. 의문사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때 현행 검시제도가 수많은 의문사 사건을 발생시킨 요

기룡 검사는 위 논문에서 “1998년 2개월에 걸쳐 11명의 어린이가 New Mexico, Utah, Pennsylvania 등 3개의 주에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일련의 사망사건들을 검시한 결과, 1987년부터 1999년 까지 전국적으로 총 21명이 사망하였는데,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트렁크에 갇힌 어린이들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 때문에 전국 고속도로안전협회의 전문가 집단이 소집되었고 그들은 차 트렁크 잠금장치를 안에서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전국 고속도로안전 협회에서는 2001. 9. 자동차제작회사에게 위와 같은 새로운 안전 기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Dan Sosi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2003, p38). 즉 위와 같은 [자동차 트렁크 잠금 해제 장치]의 사례에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검시제도의 존재가치가 예방가능한 공중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적고있다.

2) 최근의 논의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04. 7. 30. 의문사위가 청와대 업무보고시 검시제도 개선 건의
- 2004.9~2005.5. 검경수사권조정 협의체, 검경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에서 향후 전문검시관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논의
- 2005. 6. 10. 국회의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 2005. 8.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청와대에 검시제도개선방안 보고
- 2005. 11.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무부,대검,경찰청,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사인확인제도 개선추진단’을 설치하여 법령정비,관련조직구축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등

인으로 작용하였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사인확인제도(死因確認制度) 개선을 건의하였고,³⁾ 그에 따라 법무부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2005. 10. 21. 유시민 의원(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의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원회 심의중에 있는 등, 여러 관련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실무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아울러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검시제도 개관

1. 검시(檢視)의 의의

가. 일반적 개념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조사, 즉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관계자 신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가 필요한 주변 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⁴⁾ 그런데 검시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시(檢屍), 검안(檢案), 부검(剖檢) 등 서로 다른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서 혼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우선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⁵⁾으로 검안과 부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 external examination)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권고 14항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檢屍)기관을 설립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사체의 검안과 부검은 반드시 전문적인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병리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②검안과 부검을 시행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기관과 대등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있고, ③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사인확인기구(세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4) 대한법의학회,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2002), 2면.

5) 위 논문, 3면.

은 시체 손괴 없이 그 외부만을 검사하는 것이고, 부검(剖檢, autopsy)은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를 하여 검사하는 것인데,⁶⁾ 부검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사법·병리·행정부검으로 나뉜다.⁷⁾ 사법부검(judicial autopsy, legal autopsy)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변사체에 대한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부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고, 병리부검(pathological autopsy)은 사망에 외인이 작용하지 않는, 즉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병사는 확실하나 그 사인이 애매한 경우 사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고, 행정부검(administrative autopsy)은 행정법규이자 사체 해부에 관한 기본법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전염병사망자, 행려사망자, 사고사, 재해사, 병사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사인불명의 경우 또는 사망의 종류가 불확실한 사체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나. 사법검시와 행정검시

검시(檢視)는 목적에 따라 사법검시와 행정검시로 분류된다. 사법검시는 사람의 죽음이 범죄에 기인되거나 이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검사가 시행하는 검시로서 범죄와 관련된 변사체에 대한 검시를 일컫는다. 이에 비하여 행정검시는 죽음의 원인이 범죄와는 관계없는 사체에 대하여 사인규명, 신원확인, 전염병예방, 사체처리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검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법검시와 행정검시의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되는 사체에 차이가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자살에 의한 사체, 익사체,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체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어 행정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도 대부분 검사의 검시, 즉 사법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⁸⁾

6) 위 논문, 3면.

7) 문국진, 법의검시학, 청림출판 (1996), 73면.

8) 송해은, 변사체검시의 개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 제2집, 1992, 291면. 위와 같이 행정검시대상임에도 이를 사법검시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상(제222조 제1항)의 변사체검시(變死體檢視)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을 의미한다.⁹⁾ 앞서 보았듯이 이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사법검시’로서 범죄와 관계 없는 사체(예: 행려사망자, 동사자)에 대하여 전염병예방, 사체처리, 신원확인 등의 행정목적에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검시’와 구별된다.¹⁰⁾ 그리고 변사체검시는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 아니고 검사의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므로 이는 수사의 단서, 즉 수사이전의 처분에 불과하고, 수사처분 그 자체는 아니므로 수사처분의 일종인 ‘검증’(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과 구별된다. 실무상으로는 수사처분인 사체해부 등 검증도 검시의 개념에 포함시켜 언급되고 있다.¹¹⁾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검시제도를 사법검시위주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²⁾ 사법검시위주제도에서는 수사당국에 신고된 변사 중 부검의 채택여부를 수사당국에서 결정함으로써 부검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변사사건 위주로 취급하게 되고, 의료인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검안 등을 실시할 뿐이다. 이에 비하여 행정검시위주제도는 변사체가 신고되면 감찰의(일본), 법정외(독일)등과 같이 검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의사가 현장에 출동, 사체를 검안하여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변사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등에 부검 의뢰되고, 그 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변사, 특히 전염병

9) 차용석, 백형구 편, 주석 형사소송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48면.

10) 대검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중 행정검시(무연고자 시체)는 617건으로 그중 20건은 의과대학에 교부되었고, 나머지는 화장, 가매장 등 처리되었다. 한편, 2002년중 사법검시와 행정검시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 계
	비교통사고	교통사고		
2002	25,642 (74.0%)	8,374 (24.2%)	617 (1.8%)	34,633 (100%)

11) 송해은, 위 논문, 285면.

12) 안원식,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강력검사연구논문집 제3집, 1993, 124면.

환자의 사망, 행려사망자, 사인불명인 병사, 신생아 및 임부의 사망등과 같이 보건정책상 필요한 부검은 전문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행정절차로 시행된다.¹³⁾

2. 검시의 주체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22조 제1항). 즉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를 한다. 현행법상 검시는 검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고,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검시의 권한이 없다. 물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자로서 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검시를 대행(代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검시를 대행검시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고, 실무상으로는 대행검시가 통례이다.¹⁴⁾ 그리고 행정검시는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의 명에 의하여 관할 지구대장이 실시하고 있고,¹⁵⁾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부검의 경우, 이미 살핀바와 같이 시체해부및보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사체해부 명령을 하도록 되어있다.

3. 검시의 대상

사법검시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이다. 여기서 “변사자”란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의문이 있는 사체, 즉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자연사의 사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상의 병사 또는 자연사의 사체는 변사체가 아니므로 형사소송

13) 안원식, 위 논문, 126면.

14) 위 주석 형사소송법(Ⅱ), 제249면 참조.

15) 경찰청 예규 207호(1999.1.20), 행정검시규칙 참조.

법상 사법검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자연사라 할지라도 천재사, 익사, 자살 등과 같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검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처분인 검증의 대상으로 되나 검시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자연사 아닌 사체는 모두 변사체로 보아 익사, 자살 등도 검사의 검시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관행인데,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사법검시 대상과 행정검시의 대상의 구분이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로도 불명확하여 명확하지 않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검시를 수행할 만한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며, 특히 행정검시를 실시할 경우 추후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있으며, 또한 시체를 존중하는 전통 때문에 법관의 영장 없이 사체해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서적 거부감이 강한 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 행정검시의 대상은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여 병사자로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사체이다.¹⁶⁾

4. 검시의 법적 근거

가. 시체의 해부와 관련된 기본법으로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있다. 위 법 2조에서는 시체 해부의 경우를 부검의 각 종류, 즉 사법부검, 행정부검, 병리부검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6조 규정이 행정부검에 해당된다. 한편 위 법 제7조에서 변사자 및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소정의 검시를 받은 후에야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검시의 행정검시에 대한 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6) 대검의 변사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 형이(강력) 제136호, 1981. 9. 1.제정, 지침전환 2003. 9. 1.)에서는 위와 같은 자연재해사, 행려병사로 인한 사체에 대하여는 검사의 검시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검시로 완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행려병자, 익사,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등까지 그 사망원인이 범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검사의 변사체검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변사체발생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다.

5 이 임 성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2조 (시체의 해부) ①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삭제<1998.12.30>,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자등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시체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검역법

제11조 (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운송수단, 그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또는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장하는 것

나. 사법검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체 검시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검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이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일반적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압수, 수색,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사법부검의 근거규정이 된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은 제1항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3조(시각의 제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 검안(檢案)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8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검안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검안의사의 변사체 발견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18조 (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제24조 (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처벌된다. 17)

○ 전염병 예방법

또한,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의사의 시체 검안과 관련하여 전염병 관련 시체의 검안에 대한 의사의 신고의무 및 전염병사망자에 대한 검안을 위한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사등의 신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부산고등법원 2000. 9. 20. 선고 2000노413호 의료법위반 등.

“의료법 제24조 소정의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사체를 검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취지를 보아 치료도중 사망하여 사망의 진단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망의 진단을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사체를 검안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변사의 의심’이란 사인에 관한 병리학적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의학적인 이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체로부터 인식할수 있는 이상한 흔적 내지 증상뿐만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경위, 장소, 상황, 성별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불재 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소속부대의 장 18)

Ⅲ. 현행 변사체검시의 실무 및 절차

위에서 본대로 검시제도는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국가적 노력의 표현이고, 그 중요성 때문에 검사가 변사체검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의 검시 목적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의 존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변사사건 수사의 중심은 변사자의 신원, 상해와 사망 시간, 상해와 사망장소, 사인, 사망방법과 수단, 범인 등을 확인하는데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변사사건이 연간 30,000건을 넘고 있어 검사가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요변사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검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변사체 발생보고를 접하고, 경찰 의견대로 처리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변사체발생보고는 사체의 상황, 발견자의 진술, 가족의 진술, 대동한 의사의 검안소견을 토대로 작성된 1차적 판단이므로 이를 믿고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간혹 중대한 인명침해 범죄의 암장이나 증거로서의 가치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하거나 그 처리를 지휘함에 있어서 법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해야 함은 물론 개개의 변사체에 대하여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지휘나 형식적인 검시를 지양하고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22조

18) 그리고 변사체검시와 관련하여 형법 제163조에서 변사체검시방해죄 규정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6호에서도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별첨 자료 (1),(2) 참조.

(변사자의 검시)에 근거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검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절(변사자의 검시), 변사사건처리지침(대검예규 제136호, 1981. 7. 1), 변사체검시 및 지휘의 철저히침(대검검찰 820-5618, 1979. 6. 23)등 많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²⁰⁾ 아래에서는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시 및 부검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변사체 발견 보고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위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로 보고되고, 즉시 형사과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 경찰공의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변사체를 조사한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사체의 상황, 발견자 및 가족의 진술, 대동한 의사의 검안소견 등을 토대로 검사에게 유선 또는 “변사체발생보고”를 보고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종래 검사의 검시대상으로 취급하여온 변사체중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수재(수재), 낙뢰, 파선(파선)등 자연재해사, 행려병사로 인한 사체에 대하여는 검시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검시로 완결하도록 하고 있다.²¹⁾

20) 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검험(檢驗)이라는 검시제도를 운영했다. 즉 살인 기타 치사사건등 인명에 관한 소위 살옥(殺獄)이 발생하면 해당 관리가 그 현장에 가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번 실시(수령이 초검, 관찰사가 복검, 형조에서 삼검)한 다음 심리결과를 임금께 보고하여 재가받아 처결하였다고 한다(장진근, 조선조 검시제도인 검험에 대하여, 검찰 108호, 대검찰청, 1997). 또한 일부 견해로는 “식민지 일제 강점하에서도 각 도지사에게 직속되어 있는 공의제도와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에서 부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시제도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오히려 해방이후 미숙한 정치와 제도(특히, 대륙법계의 검시제도를 채택하고, 법의학 교육은 미국체계를 모방하여 모순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검시제도가 후퇴하였다”고 평가한다(김희수, 2005년 검시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자료, 7면 참조).

21) 현재 경찰청 예규(1999. 1. 20. 207호)인 행정검시규칙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서 지구대장은 관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전통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변사체가 행정검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경찰서장이 행정검시 여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지구대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고,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며, 행정검시 조서, 의사검안서, 사체인수서를

그리고 신속한 검지지휘를 위해 전통보고를 받아 처리할 대상사건으로는 1) 의사, 소사, 감전사, 추락사, 약물 또는 가스 중독사, 산업재해사, 교통사고사체(다만 도주차량에 의한 사고사, 표류 의사체, 암장사체 제외), 2) 원거리, 도서지역 등 검사의 직접검시로 시간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역의 모든 변사사건이고, 위 대상 사건 중 변사체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과 유족, 발견자, 목격자 등 관계인의 진술 및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하였거나(예 : 자살, 자기과실사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고의 또는 타인의 과실에 기인한 변사체(교통사고사체, 유람선의 전복으로 인한 의사체, 방화 또는 실화로 인한 소사체, 각종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사체 등)로서 부검 필요가 없고 유족이 사인을 다투지 아니하는 변사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의 발생 및 지휘품신과 검사의 처리, 지휘일체를 전통수단을 활용, 신속처리함으로써 최소한 발생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되어있다.

한편, 살인, 강도살인(강도치사),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강간치사)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불명 등으로 부검에 의한 사인 규명의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끄는 변사사건 또는 중요인사에 대한 변사사건은 서면보고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사인을 규명키 위하여 변사체 부검을 할 경우라도 최소한 변사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유족에게 사체를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대장은 행정검시 도중이라도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사법검시의 절차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행정검시 규칙에서 검시에서는 검안만 규정하고 있어, 결국 행정부검은 해부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 법률에서는 행정부검이 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검찰청 검시사건부예의 등재

검찰청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검찰청사건사무규칙 제11조 제1항). 그리고 변사자 중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 벌금미납, 수사중 또는 재판계속 중인 경우에도 사망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없이 변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내지는 소재수사 등을 하고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사사건담당자는 변사자의 범죄경력 및 수배경력 조회서를 확인하여 기소중지사건, 벌금미납, 수사중인사건, 재판계속중인 사건 등이 발견되면 “변사자 기소중지 등 사실통보양식”에 의거, 각 담당 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한다.

3. 검사의 변사사건 지휘

일반 변사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지휘담당 검사가, 살인 등 강력사건은 강력전담검사가 주임검사로 되고, 당직시에는 당직검사가 주임검사로 지휘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전통보고를 접수한 강력담당검사 또는 영장담당검사는 변사자 전통지휘부에 그 요지를 등재하고 전통으로 지휘하며 전통지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지휘를 받도록 한다.

우선,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범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사체검시하여 사인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할 것”으로, 유족이 없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체검시하여 사인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처리할 것”²²⁾으로,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거나 범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사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족이 사인에 대하여 의문을 제

22) 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과)에 사체를 인도하여 사체를 ‘가매장’하게 된다.

23) 실무상 이를 사체지휘라고 하고, 변사에 관련된 수사지휘를 사건지휘라고 한다.

기하여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체부검하여 사인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할 것”으로 지휘한다.²³⁾ 그리고 타살의 의심이 있거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는 중요 변사사건이나 강력사건에 있어서는 의문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지휘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검시절차

가. 검사의 직접검시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요 변사사건 등의 경우에만 직접 검시를 하고,²⁴⁾ 그 외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시를 하도록 지휘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제3항). 현재 각급 검찰청은 관내 의사회와 협조하여 해부병리전문의 기타 전문의 등을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활용하여 변사체의 검안과 부검 등 사인규명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 대검 “변사체검시 및 지휘의 철저(대검검찰 820-5618, 1979. 6. 23)”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자신이 진료 중이던 사람이 최종 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검시없이 발행하는 사망진단서(의료법 제18조)와 그 이외의 시체에 대한 시체검안서(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에도 검시를 한 후에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상의 변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유서, 흉기, 독극물 등 유류품에 의하여 자·타살, 사고사의 구별은 물론 치열의 상태, 혈액형, 복장의 상태(시체

24) 2005년도 변사체 발생인원은 총 29,055명이고, 그중 3,150명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한바 있어서 검사의 직접검시율은 10.8%에 이른다. 2005년도의 전국 변사체 직접검시현황 및 종별 변사사건 처리현황은 별첨자료(1),(2)와 같다.

검안의 경우) 등으로 개인식별에 철저를 기할 것.

-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이 국제질병 및 사인통계분류에 의한 것인지 유의할 것.
 -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등을 정확히 구분할 것이며 외인사 특히 손상이 된 경우 외상과 사인과의 관계가 직접적이었는지 간접적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것.
 -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마비 또는 호흡정지 등 죽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을 직접사인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인이 될만한 병변(병변) 또는 손상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신체기관 기능의 중요도, 병변 및 손상의 중증도 또는 발생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인의 우선결정을 유의할 것.
 - 병변 또는 손상이 경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사인이 못되나 그 수가 많아서 여러 개가 합치면 사인이 될 수 있는 사인합동의 경우와 여러 개의 병변 또는 손상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구별키 곤란한 사인연립의 경우에는 병변 또는 손상을 모두 열거토록 할 것.
- 가급적 보고이후 1시간 이내에 직접검시 또는 검시지휘 실시하고, 지휘시간, 사경의 변사체처리시간을 기재토록 하며,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체부패로 사인규명의 곤란과 유족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나. 현장보존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4조 제1항).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게 되는 경우, 발견자 등에 의한 사체변경 가능성을 유의하고, 현장보존의 장소적 범위(범인대기장소, 유형력행사장소, 사체발견장소 등)와 보존조치기간을 지휘하고, 중요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수사와 별도로 현장주변 유류품, 주변 상황, 유서 등의 내용, 사체의 상황 등을 촬영 보관하여 추후 있을지 모를 현장상황에 대한 왜곡된 보고나 수사발표 등에도 대비한다.

다. 증거물 확보 및 보존 및 지문채취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4조 제2항). 증거물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을 받아야 하지만,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동법 제218조),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제3항). 직접검시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되기 전에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현장계측, 현장사진 및 도면 등에 의한 현장기록 등을 신속히 철저히 하도록 지휘하고, 확보된 증거물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수사기법활용을 지휘한다. 특히 유전자분석법은 DNA 지문이 두사람이 동일할 가능성이 3천만분의 1정도인 점에 착안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에서 유전자가 확보되면,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 유전자형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사건해결에 성과가 없지만, 용의자가 있다면, 그의 유전자형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²⁵⁾ 또한 잠재지문 및 변사자 지문채취에 유의해야 하는 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4조 제3항), 현재 경찰청 감식과에서 보관하는 개인별지문기록카드(10지지문원지)를 조사하여 동일인의 지문을 찾아낼 수 있다.

라. 자살사건의 경우

자살자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6). 유서 등이 있어 본인 필적여부에 대하여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분쟁 또는 진술번복을 대비하여 필적감정을 지휘할 필요가 있고, 이미 변사자의 필적임을 인정한 가족들로부터 비교대상 필적을 구하

25) 대검에서는 약 10년전부터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난 2006. 3.에는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와의 합의하에, 방화·살인등 10개 유형의 특정범죄에 한해 수형자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가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확보에 신경을 써야한다. 유서내용 공개와 관련, 개인에 대한 유서인 경우 반드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은 다음 공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비공개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니면 공개하지 말도록 지휘(유서는 개인 편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조치 필요)한다.

마.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의 작성

사체를 검안한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4조 제3항). 그리고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제2항), 검시조서는 검시조서철(동 규칙 제61조 제1항 제15호, 보존기간은 2년)에 편철한다. 검시조서 작성을 위해 사체를 조사함에 있어 사체가 있는 상태 그대로를 기재하고, 사체가 놓여 있는 자리의 상태와 사체의 모양과 자세, 의복, 근접한 물체와의 관계 등 주위 환경을 기재하며, 사체의 상처나 지문, 신발 자국 등 여부를 관찰한 후, 상황을 분석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²⁶⁾

26) 특히 살인 등 강력사건에 대하여, 현장점검사항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검강력 61100-494).

-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시 경험칙에 의존한 만연한 초동수사로 야기될 수 있는 현장 보존·관찰 상의 오류나 기타 주요 증거자료 취합 누락 등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현장점검사항표(체크리스트)가 작성됨
-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시 관할경찰서 형사과장(강력반장)은 전담검사에게 즉시 유선보고하고 현장에 임하여 현장점검 사항표상의 “현장발견 보존단계” 조치 취한 후 검사 지휘대기
 - 강력전담검사의 현장 구두지휘 내용 및 현장점검사항표 상의 “현장관찰·증거자료 수집단계” 조치 이행
 - 각 단계별 점검결과 및 확인·조치사항을 현장점검 사항표에 기재한 후 전담검사에게 보고
- 작성·활용 완료한 현장점검사항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수사·공소유지 자료 활용

5. 부검(사체의 해부), 감정의 위촉 및 검증조서의 작성

사체의 해부에 관한 일반 법률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로서, 위법 7조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140조나 제173조 제1항의 검증이나 감정절차에 따른 해부의 경우에는 검시절차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제4조는 사체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나 제173조 제1항(감정)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는 검증(형사소송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동법 제215조)받아 하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어(동법 제222조 제2항)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²⁷⁾ 사체의 해부를 하는 때에는 시체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예의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7조).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0조). 또한 부검 시 검찰에 배속된 공중보건의²⁸⁾를 동반하는 것도 필요하고, 종료 후 집도의를 만나 최종의견도 확인해야 한다.²⁹⁾

27) 위 주석 형사소송법(Ⅱ), 251면.

28) 공중보건의의 검찰청 배치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서울중앙·대구·수원지점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주로 변사체검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9) 위와 같은 부검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본소, 서울출장소) 및 그 분소(남부, 서부, 중부 등 3곳) 또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편, 검시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사체를 해부한 후 필요한 신체부분을 적출하여 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감정수사의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위촉된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체의 해부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감정인이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검(사체해부)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하는데,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6. 사체의 인도

검시가 끝난 사체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유족이 있으면 유족에게 인도하고, 유족이 없으면 행정당국에 인도되어 가매장을 하게 된다. 한편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통수단에 의거 처리된 변사사건에 대하여는 변사사건 발생 신고 접수 12시간 이내에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고, 사인을 규명키 위하여 변사체의 부검을 할 경우라도 최소한

일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예컨대 울산지검 관할의 경우 2005년도에는 총 118건의 부검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91건이 일반병원(울산중앙병원 및 씨티병원)에서 시행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서의 부검은 27건이었다.

변사사건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유족에게 사체를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분증·유류물품 등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조사하여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12조).

7. 장기 및 인체조직등 적출문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8조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거하여 뇌사자, 사망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전에 장기등의 이식을 위한 적출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적출에 업무를 처리하는 의료담당검사와 상의하여 검시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적출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³⁰⁾

8. 변사사건의 종결

가. 변사사건 종결지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를 받아 완결된다. 즉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내사종결지휘를 건의하여 그 지휘에 따라 변사사건을 종결한 후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변사사건종결철(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61조 제1항 제11의 2호, 보존

30) 대검예규(형이 제393호, 2006. 3. 6.),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관련 업무 처리지침 참조.

기간 15년)에 편철한다. 한편 ② 변사자가 강력범죄나 교통사고 등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므로 변사사건의 서류일체는 당해 수사사건의 기록으로 이관되고, 변사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종결한다. 한편, 검사는 위 ①과 같은 사유로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미진사항이나 의심스러운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수사지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종결지휘 전에 변사자 신원확인 및 유족 수배에 최선을 다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나. 변사사건에 대한 감찰

신속한 변사사건처리에 치중한 나머지 변사체에 대한 적절한 검시를 누락하여 범죄의 암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부검 감정결과 회보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변사사건을 장기 방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사사건미제목록을 중심으로 감찰해야 한다.

Ⅳ. 현행 변사체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검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검시제도는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와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로 나눌 수 있고, 영미법계에서도 영국 검시관제도(Coroner system)와 미국 법의관제도(Medical Examiner system)로 나누어진다. 겸임검시제도는 검시의 책임자가 검시 이외의 업무도 같이 담당하는 제도이고, 전담검시제도는 이들이 검시만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검시관(Coroner)이나, 법의관(Medical Examiner)이 검시의 주체가 된다.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제국과 일본 등에

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³¹⁾

그런데, 이미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검시제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인권침해방지 및 공공의 건강증진이라는 현대적 기능까지 포함한 검시제도의 기능에 비추어 인권보장이나 국민전체의 보건정책수립이라는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32),33)}

가. 검시기관 등의 전문성 부족

먼저 변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 등 처리절차에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가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상으로 검시의 주체인 검사, 검시를 대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대부분 법의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변사체발생보고에 첨부하는 시체검안서의 작성 의사도 대부분 법의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비록 검안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하여도 역시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법의학 전문의사는 사체 부검 때에서야 참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법의학 전문의사가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검의가 최초 발견시의 시체상황, 관련자의 진술요지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변사체검시의 과정에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가 부

31) 별첨 자료(3) 각 검시제도의 비교 참조.

32) 의문사위에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근대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나라의 검시제도를 고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너무 허술하다(제대로 된 검시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를 경시하거나 포기한 행위라 할수 있다). 앞으로 의문사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의문사가 더욱 많아지리라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서 비판하고 있다(위 보고서 참조).

33) 검찰 내부적으로도 현행 변사체검시제도에 대하여 ①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하여 검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사’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자칫 필요한 검시가 누락될 우려가 있고, ② 현행 제도 하에서 검사는 검시책임자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를 근거로 사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등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2006년도 신임검사 교육교재, 법무연수원, 740면 참조).

족하고 대부분의 과정이 비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변사체에 대한 명확한 사인확인이 안되어 범죄에 의한 사망이 은폐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실시되므로 부검에는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에 의하여 부검까지도 수행됨으로써 사법검시의 전 과정에 법의학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확한 사인확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나. 검시 대상 및 관련 개념의 불명확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검시대상인 변사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검시의 대상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의료법,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등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즉, 변사체 개념에 대하여도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법률상으로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변사체인 여부에 대하여 검시 주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따라 검시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검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범죄가 은폐될 위험성도 상존하는 실정이다.³⁴⁾ 그뿐만 아니라 변사체 개념이 불명확한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법검시와 행정검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무연고자 사체의 처리외에는 사실상 행정검시가 거의 활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³⁵⁾

34) 대한법의학회, 앞의 논문, 15면.

35)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 유등을 보면, 기존 행정검시를 위해 부검을 하는 경우에는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 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 책임문제에 있어서 추궁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이유로 (사법해부가 아닌, 행정검시규칙에 따른 병리해부, 행정해부등의 실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 독립성 및 공정성의 문제

사법검시절차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부검의 경우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선정한 부검의에게 의뢰되고, 그 부검의에 의하여 부검이 수행되게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변사체검시절차에서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이 수사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검안과 부검을 행하여야 비로소 공정한 검시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검시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해지고, 그들에 의하여 선정된 검안의, 부검의가 검안 및 부검을 하며, 특히 부검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행해지고 있어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다.³⁶⁾ 현행 변사체처리과정에서 사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수사기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 부검 결과의 공정성 및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³⁷⁾

라. 절차지연의 문제

그 동안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중의 하나가 처리 절차의 신속성 문제였다. 그렇지만, 현재 대검찰청의 지침상 변사체 발생 보고를 받은 이후 가급적 1시간내 신속 지휘토록 하고 있고,³⁸⁾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모사전송의 방식에 의하여 변사발생보고 및 지휘건의를 받아, 최우선적으로 사체 및 사건지휘하고, 지휘내용을 유선으로 사경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지 않는 사건의 지휘는 대부분 3시간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검시하는 경우에도 사건발생보고 당일에 검시를 마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3일장에는 전혀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 따라

36) 임규옥 등, “한국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안”, 현사정책연구 14권4호 (2003), 13면.

37) 의문사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실상 경찰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바로 그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로부터도 독립된 사인확인기관의 설립을 건의한 것이기도 하다.

38) 대검검찰 820-5618호 “변사체검시 및 지휘의 철저” 지침 참조.

서 신속성의 문제는 대폭 개선되었다.³⁹⁾

물론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지휘가 충분히 신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체발견 신고 후부터 검사의 부검 필요성의 판단에 따라 범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사체는 계속하여 부패가 진행되므로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⁴⁰⁾

2. 개선방안

가. 관련 법령 정비

현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률에 검시의 대상인 변사체의 개념과 관련한 개념 규정이 없어서 변사체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검시 대상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 여지도 있는 점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선진각국의 검시제도의 공통적인 요인의 하나가 바로 검시대상인 죽음의 종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⁴¹⁾ 다만 대륙법체계인 독일은 검시 대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외인사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체에 대하여 법의학 전문가인 법정의에 의하여 1차 검안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모든 변사체검시에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시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유형의 죽

39) 그러므로 변사체처리에 있어서 검사지휘로 신속한 장례가 어려워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다만 부검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 부검실시기관의 업무과중, 또는 주말연휴 등 개별 사정으로 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40) 한길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비교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제36권(2004), 107면.

41) 조기룡, 앞의 논문, 214면. 즉 검사나 검시전문위가 반드시 조사해야할 죽음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비전문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조사되지 않고, 간과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안이고, 특정 유형의 죽음에 대하여 검안 의사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법의병리전문회의의 2차 검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영국 스코틀랜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검사(procurator fiscal, 지방검찰관)를 수사의 주재자이자 법령상 정해진 죽음에 대하여 조사 의무를 가진 검시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조사대상을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²⁾ 즉, ① 사인이 불명인 죽음, ② 자동차, 항공기, 열차 등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사, ③ 산업 사고나 직업병이나 산업 중독에 관련 있는 산업 근로자의 죽음, ④ 중독사, ⑤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죽음, ⑥ 마취 중에 사망한 경우, ⑦ 사고로 인한 사망, ⑧ 임산부의 유산에 따른 사망, ⑨ 직무상 태만이나 과실에 따른 사망, ⑩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한 경우, ⑪ 버려진 신생아의 사망, ⑫ 집밖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자의 주거를 모를 때, ⑬ 익사, ⑭ 소아의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⑮ 식중독 및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 화재, 화상, 폭발로 인한 사망, □ 입양한 아이의 죽음, □ 약물에 의한 사고를 의심하는 경우, □ 폭력에 의한 사망, 급사, 기타 설명할 수 없는 죽음, □ 사망자가 받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유족이 의심을 제기하거나, 의료행위가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암시될 때 등이 그것이다.⁴³⁾

나. 검시기관의 독립성 확보

대륙법계 형사소송법 체계를 따른 우리나라에서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로부터 독립되어 변사체에 대한 사인확인을 하고, 부검 등 최종 처리결정을 내리는 영국식 검시관(coroner) 또는 미국식 법의관(medical examiner)

42) 박희경, 대륙법검시제도 고찰(스코틀랜드의 경우와 비교분석),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제327호(2003.11.), 115면 이하 참조.

43) 또한 범죄현장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법의관이 사체를 옮길 것을 허락하기 전에 누구도 죽음의 현장에서 옮겨서는 안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는 특히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살인사건의 경우 전문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살인사건의 경우 검사의 허락을 받기전에 누구도 사체를 현장에서 옮겨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조기룡, 앞의 논문, 221면 참조).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⁴⁴⁾ 실무적으로 변사사건처리는 중요 강력사건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법검시의 경우 영장에 의한 부검이 원칙이어서 영장청구권자인 검사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시체를 존중하는 국민정서상으로도 영장 없는 부검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또한 일선 경찰에서는 강력사건 미제발생에 대한 부담을 느끼므로 변사사건의 사인규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사건의 암장 방지를 위하여서도 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⁴⁵⁾ 나아가 현행 사법검시제도는 변사사건 발생시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경찰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을 피할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이 있는 죽음일 경우에는 초동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사가 총괄할 수 있어 범죄수사 및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유리한 점도 있는 등,⁴⁶⁾ 현행 사법검시체제의 제도적 타당성도 존재한다.

다만, 사인의 의학적 판단의 면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부검이 시행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 직제상 경찰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으로써 제기되는 사인판단과 관련된 의혹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법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만 아니라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나 병리학 교실에서 병행 시행함으로써 사인의 법의학적 판단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법의학 전문가 양성에도 도움이 되어 법의학 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하고, 양성체계도 미비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44) 위에서 본 의문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대륙법계열인 우리나라에서 별도 검사관이나 법의관을 두는 것은 전체 사법구조를 보아 허용하기 어렵고, 검사의 검시권한을 이양하지 않더라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검시업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건의하고 있다.

45) 더욱이 오늘날 같이 범죄수법의 지능화, 완전범죄기도 등으로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병사, 자연사나 교통사고사 등으로 위장하고 조작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자살사건이 빈발하여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와 관련된 자살방조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별첨자료(4) 모범적 수사지휘를 통하여 암장사건을 발굴한 사례 참조.

46) 박희경, 앞의 논문, 16 - 17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의학적 판단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인확인기관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⁴⁷⁾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변사사건을 지휘(내사)하는 현재의 대륙법계 사법검시체계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①가칭 ‘법의관’ 제도를 신설, 법의학 전문의를 법의관으로 임명하여 사인확인을 위한 검안 □부검등 과학적 조사행위를 총괄하게 하여 사인확인인의 정확성 제고하고, 법의관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인사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독립성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②법의관은 검안을 직접 실시하고, 부검 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의과대학에 위탁하되, 법의관과 국과수의 연계를 통한 부검의 효율성 제고 및 의과대학에 위탁부검을 통해 법의학 전문의 지속적 배출 유도하고, ③법의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부 대도시에만 배치하고 순차 확대 실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행정검시를 전담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되, 법의관이 기존의 행정검시주체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행정검시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도 수사기관에서 독립된 사인확인기관으로서 검시관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⁴⁸⁾

47) 사인확인제도 추진계획, 법무부 정책기획단 자료(2005. 7.)

48)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검시(檢屍)를행할자의자격및직무범위에관한법률안(2005)”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무총리 소속 하에 ‘검시위원회’ 설치
 - 검시관 양성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검시기관 설치
 - 검시기관의 장은 검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검시관의 직무를 의과대학 소속인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음
- 검시관의 자격을 법정함
- 수사기관과 검시관은 서로 협조관계 유지
 - 수사기관은 변사체 발견시 검시기관에 통지 의무
 - 검시관은 변사 현장에서 검시, 검안을 하여야 함
 - 검시관은 검시업무 중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
 -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한 검시는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검시관이 실시 가능

다. 사문화된 행정검시제도의 활성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범죄수사외에도 대형 재난사고, 보험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사인확인 및 자료관리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국민건강, 보건 및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9)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검시에 대한 다양한 기능 충족을 위하여 행정검시를 활성화해야 하고, 다만 법의학 전문의가 매우 부족한 우리 현실 하에서는 실효성있는 행정검시체계의 즉시 도입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검시를 전담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와 법률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50) 이웃 일본은 범죄와 무관한 사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감찰의(監察醫) 51)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있음도 참고할 만하다.

라. 검시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보장

앞서 보았듯이 변사체검시 과정에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검사는 전문가의 참여와 그에 의한 자료를 받음으로써 정확한 사인 확인 및 범죄관련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충분한 법의학전문가의 충원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자와 대학의 전문의 등을 포함하여 법의학 전문가가 30 - 40명 정도 52)로서 모든

□검시관은 검사의 검시에 협조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수사기관은 검시관의 수사자료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

49) 임규옥 등, 앞의 논문, 5면.

50) 그 동안 범죄관련성이 희박한 행정검시대상인 시체까지도 사법검시절차를 거쳐 사인을 확인하는 실정이어서 검찰,경찰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51) 현재 일본 감찰의무원 제도는 도쿄, 오사카등 5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감찰의는 전문의사로서 주로 행정검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인이 불명한 경우 독자적으로 부검하고 범죄혐의가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법검시절차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주재하에 진행되고, 사법검시 대상 사체에 대하여는 통상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서 부검하여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52) 이윤성, “적절한 검시제도를 위하여”, 검시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2005), 61면.

사법검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실정아래에서는 최소한 변사체검사에 입회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는 경찰공의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법의학 연수를 받도록 자격을 요건화하거나, 현재 일부 검찰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확대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 법의학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검은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법의학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될 필요성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처럼 일반 병원 등에서 법 의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의사에 의하여 부검이 시행되는 것만큼은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별첨(1) 변사체 직접검시 현황

(기간 : 2005. 1. 1.~12. 31.)

청별 / 구분	발생인원	검사직접 검시인원	검사직접 검시율(%)
계	29,055	3,150	10.8
서울중앙지검	1,500	105	7.0
서울동부지검	825	107	13.0
서울남부지검	1,042	41	3.9
서울북부지검	1,261	149	11.8
서울서부지검	1,011	157	15.5
의정부지검	1,870	199	10.6
인천지검	1,879	226	12.0
수원지검	3,266	348	10.7
춘천지검	1,414	199	14.1
대전지검	2,452	235	9.6
청주지검	1,057	94	8.9
대구지검	3,248	367	11.3
부산지검	2,370	253	10.7
울산지검	691	70	10.1
창원지검	2,017	218	10.8
광주지검	1,622	149	9.2
전주지검	1,137	117	10.3
제주지검	393	116	29.5

※ 교통사고사건 제외

별첨(2) 변사사건 처리 현황

(기간 : 2005. 1. 1.~12. 31.)

구분		합계	의사 교사	익사	소사	가스 중독사	약물 중독사	교통 사고	도검 흉기	총기 사고	안전 사고사	기타
합계	발생 인원	35,782	5,431	1,685	462	137	3,543	6,727	408	19	1,269	16,101
	검사 직접 검사	3,204	446	160	78	22	208	54	243	13	95	1,885
	부검	4,740	290	304	210	25	165	247	3	11	11117	3,060
자살	발생 인원	13,268	5,338	642	98	54	3,388	114	62	5	146	3,421
	검사 직접 검사	1,035	406	72	16	7	190	2	18	2	16	306
	부검	967	240	142	53	9	141	4	16	2	5	355
타살	발생 인원	1,437	55	12	270		12	623	343	12	27	326
	검사 직접 검사	462	39	3	13	0	0	6	224	10	3	164
	부검	691	48	8	16	0	3	30	294	8	9	275
과실사	발생 인원	21,077	38	1,031	337	83	143	5,990	3	2	1,096	12,354
	검사 직접 검사	1,707	1	85	49	15	18	46	1	1	76	1,415
	부검	3,082	2	154	141	16	21	213	1	1	103	2,430

※ 교통사고사건 포함

별첨(3) 각국 검시제도의 비교

1. 법 계	영·미법		대륙법		
2. 검시체제	전담검시제		겸임검시제		
3. 검시제도	검시관제도 (영국)	법의관제도 (미국)	법의관제도 (미국)	행정검시우선제도	
				행정검시	사법검시
4. 법률상검시 책임자 (검시의주체)	검시관	법의전문외	검 사	행정책임자 (도지사, 시장 등)	검 사
5. 검시진행자	검시관 보조원	"	경찰관	경찰관	
6. 부검시행자	법의의사 및 병리의사 (주로 대학 교수)	"	일반의사	검찰의 (일본) 법정의 (서동)등	법의의사 및 병리 의사 (주로 대학 교수)
7. 사법및 행정 부검의 구별자	검시관	"	경찰관	의사(가찰의 등)	
8. 부검 결정권자	"	"	법원판사	행정책임자 및 의사 (감찰의 등)법원판사	
9. 부검의 법원 허락 의 필요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별첨(4) 검시지휘사례

2006. 4. 기준

순번	변사 일시	변사자	사 건 개 요	검사지휘 내 용	부검결과 등	비 고
1	2005. 10.23	박병호 (65세)	신경정신과의원에 서 위탁치료를 받 던 알콜중독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 하여 사경은 타살 혐의 없으므로 사 체를 유족에게 인 도하겠다는 의견 으로 수사지휘건 의하였으나, 부검 등 보완수사 지휘 결과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사망한 액 사 사실 규명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변사자가 별다른 원인없이 사망한 점에서 사망경위 불분명하므로 부 검 실시하고 목격 자 등 상대로 사 망 경위 조사하도 록 보완수사지휘	목 부위에 타원형 의 압박흔, 출혈, 울혈, 일혈 등이, 왼쪽 광대뼈 부위 에 좌상이, 척추 돌출부에 근육간 출혈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손으로 목을 조르 는 행위로 인한 경부압박 질식사 로 판단 현재 내사중	대전지검 공주지청
2	2005. 6.17.	김동신 (48세)	사경에서 단순 지 병에 의한 사망으 로 사체를 유족에 게 인도하겠다는 의견으로 수사지 휘건의하였으나, 검사가 직접검시 한 후 부검지휘하 여 두개골 함몰사 실 규명하여 피의 자 검거	변사자의 머리 뒷 부분에 작은 크기 의 함몰골절로 보 이는 상해가 있음 을 확인한 다음, 변사자와 함께 있 었던 피의자의 진 술이 석연치 않음 에 타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검지휘	타격에 의한 두개 골 함몰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피의자 폭행치사 죄로 구속기소	대전지검 홍성지청
3	2005. 3.26.	안삼재 (65세)	백골상태로 발견 된 변사체를 행정 처리하고 교통사 고 조사계로 이첩 하겠다는 변사지 휘건의를 사체부 검하여 사인규명 하고 강력사건으 로 처리하도록 지 휘함으로써 피의 자를 검거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도로 옆 에 방치되어 백골 이 될 때까지 있 었다면 수개월 사 이 발견이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 합하고, 도로에 사고흔이라도 남 아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 담당 형사로 하여금 현 장사진 촬영토록 하고 부검 지휘	두부에 가해진 타 격에 의한 타살로 판단 변사자로부터 채 무변제 독촉을 받 던 피의자가 변사 자를 망치로 가격 하여 살해한 후 유기한 사실을 규 명하여 강도살인 죄로 구속기소	청주지검 검 사 박철우

순번	변사 일시	변사자	사 건 개 요	검사지휘 내 용	부검결과 등	비 고
4	2004. 8.15.	안태희 (32세)	사경이 단순변사로 보고한 변사체에 대하여 부검지휘하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된 것임을 밝히고 피의자를 검거	모텔방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사망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신고되었으나, 코피를 흘린 사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부검 지휘	부검결과 변사자의 경부에 손으로 누른 흔적이 발견되었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 변사현장의 유류품 중 여자의 성명과 핸드폰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발견하고 추적하여 피의자 검거. 구속기소	의정부 지 검
5	2004. 5.19.	이형운 (70세)	사경에서 실화로 인한 단순변사로 보고한 70대 노인 변사체에 대하여 검사가 부검지휘하여 둔기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타살된 것을 밝혀 피의자를 검거	변사자의 음주습관이나 대인관계 등 변사자의 사인을 추정할 만한 유족 등 지인들의 진술이 전혀 없어 변사자의 사인에 의심을 품고 사체 부검지휘	부검결과 둔기에 의한 심한 두부손상으로 판명. 변사자의 수첩에서 피의자등에 대한 채권관계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부터 피의자가 변사자로부터 심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검거. 살인죄로 구속기소	의정부 지 검
6	2004. 5.15.	서상천 (49세)	사경에서 단순 병사로 판단하여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겠다고 지휘된 변사건을 검사가 부검지휘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상해치사의 점 규명. 피의자를 검거	변사자의 음주습관이나 대인관계 등 변사자의 사인을 추정할 만한 유족 등 지인들의 진술이 전혀 없어 변사자의 사인에 의심을 품고 사체 부검지휘	부검결과 변사자의 사인이 다발성 늑골골절과 뇌출혈로 판명. 피의자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